

## 2

## 지원제외 청년

- 새로 고용된 청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

### 2-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

####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

- √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
- √ 휴직·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

### 2-2 「최저임금법」 제5조제1항,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자

- 단, 해당 근로자가 「최저임금법」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됨

### 2-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

### 2-4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

-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### 2-5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

### 2-6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
- 단,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

## 2-7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

- 단, 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(월 최대 80만원)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

### 다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지원 예시

도약장려금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, 채용일로부터 12개월 기간에 대해 연속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

√ (예시1) 다른 지원금을 통해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월 30만원 지원을 받는 경우

☞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은 월 최대 50만원, 7~12개월에는 월 최대 80만원 지원

√ (예시2) 다른 지원금을 통해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월 8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

☞ 도약장려금사업 지원 불가(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도 지원 불가)

\* 이 경우 채용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므로, 도약장려금사업이 아닌 다른 지원금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

## 2-8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

###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

√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(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) 중인 졸업예정자 (수료자 포함)

\* 기업은 청년의 졸업예정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

√ 방송·통신·방송통신·사이버(원격대학), 학점은행제, 야간대학,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

√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

\* 3학년 출석일수 이수 후,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

\*\* 단, 시·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'현장실습 선도기업'의 경우 수업일수 2/3 출석 이후 취업 가능

## 2-9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(II-2. 지원제외, 2-1. 소비·향락업 등 업종)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